

## ② 이동수리소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장 정준호	044-200-5460
		사무관 안유진	044-200-5465
		주무관 조다래	044-200-5466

### I. 사업개요

#### 1. 목적

- 어업용 기자재 수리가 어려운 도서·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 기자재 무상 이동수리·점검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에 기여

####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 현대화 촉진)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8조(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6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2년	23년	24년	25년		
이동수리소 이용자 만족도	93점	92점	93점	94.5	집계 예정	익년2월	지원 어가의 50% 이상 조사 (7점 척도)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2,116	2,116	2,116	2,116
- 국비	1,058	1,058	1,058	1,058
- 지방비	1,058	1,058	1,058	1,058

## II.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사업집행주체) 시·도(수산사무소 포함)

###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지원자격)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는 지자체

### 3. 지원대상

- 도서·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의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수협은 제외)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수리대상)

- 어선용 기관 : 디젤엔진, 선외기 엔진, 점화플러그, 연료배관, 빌지펌프 등
- 어업용 장비 : 무전기, 어군탐지기, 어선 항해등, 레이더, GPS플러그 등
- 양식용 장비 : 사료절단기, 냉동고, 베어링 등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명시된 어업용 기자재

- (수리업체 위탁(용역)계약시 인건비) 정기점검 수리업체 직원의 인건비 및 관리비용(재료비, 인건비, 자재비, 소모품비, 피복비 등 작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 포함

- 소규모 부품 무상 교체비용

###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현지 여건상 지원상한액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집행주체의 사업비

추가 확보(지방비) 또는 시·도별 배정사업비 내에서 조정 가능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1개소당 60백만원 이내
- (수리 및 부품교체)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 다만, 수산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당해 연도 1인당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부품이 아닌 연료유 및 엔진오일 등은 무상지원 불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및 최근1년 이내(시행연도 1월1일 기준)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을 받은 자는 수혜자(장비임대 및 이동수리소 이용)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 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특히,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 등”) 등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대상 확인 철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각 목 해당하는 자(위탁사업자)는 사업운영위탁 배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 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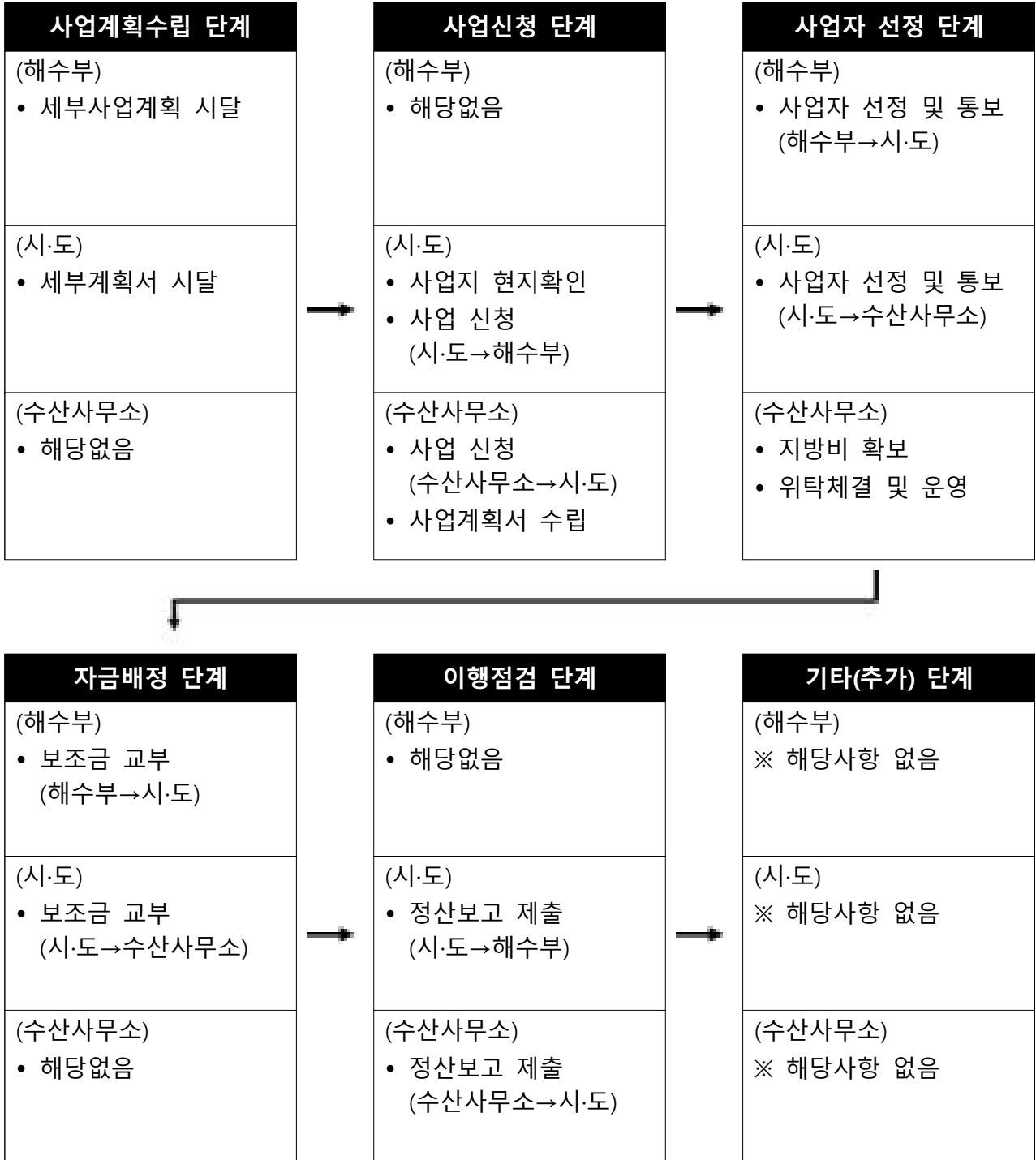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보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없음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해양수산부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서(사업시행지침)를 수립하여 시·도 시달

### 시·도

- 세부사업계획서를 수산사무소에 시달
- 수산사무소에서 제출한 '25년도 사업신청서에 대한 현지확인 등 사업적합성 여부 및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사업 신청

### 수산사무소

- 세부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시·도에 사업 신청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산사무소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전년도 3월)
  - 수산사무소장은 이동수리소 서비스 대상 어촌계와 어업용 기자재 수요량, 어업인 수, 육지로부터의 거리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수립

## 3. 사업신청 단계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지역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을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전년도 9월)

### 시·도

-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보한 사업량을 기준으로 수산사무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수산사무소에 통보(전년도 10월)

### 수산사무소

- 시·도와 수산사무소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선정 통보한 사업 물량 및 사업대상자를 감안하여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확보

#### 4. 사업자 선정 단계

##### 수산사무소

- 수산사무소장은 수리가 가능한 업체로부터 운영계획서 및 소요예산을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평가회를 개최하여 적격한 업체를 선정(계약)
  - 수리업체 비경합시, 내부 자체심의회를 통해 적격 여부 판단 후 수리업체 선정
- 수리업체는 서비스 대상 어촌계와 가약정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작성(3부) 하고, 운영계획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첨부하여 수산사무소장에게 약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수산사무소장은 수리업체와 어촌계가 작성한 운영계획서와 가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 약정기간은 당해연도 내에서 개월 단위로 약정하며, 본 시행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 등을 약정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수산사무소장은 약정체결 승인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당년도 3월)하고, 수산장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시·군·구에도 통보
  -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시·군·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수산장비가 위치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이동수리 현장에서 수리점검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수리업체는 약정서 및 운영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이동 점검·수리를 하고, 추진상황(결과)보고서[별지 제3-6호 서식], 운영일지[별지 제3-7호 서식]와 함께 수리점검 및 교체부품 사진 등을 첨부하여 익월 15일까지 수산사무소장에게 제출

#### 5. 자금배정 단계

#####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제출한 자금 수요(보조금 교부신청)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당년도 3월)

## 시·도

- 수산사무소의 분기별 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요청(당년도 3월)
- 해양수산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수산사무소별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자금 배정(당년도 3월)

## 수산사무소

-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당년도 3월 이전)
- 수산사무소장은 수리업체로부터 추진상황 결과 보고서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수산사무소는 수리업체의 수리·점검 당일 담당 공무원이 함께 수리 현장에서 수리·점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체부품 사진 등을 첨부한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점검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관리.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일 현장에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사후점검 실시(사유서 첨부)
  - \* 도서(섬)가 많은 수산사무소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이동수리소 수리·점검 현장 동행에 소요되는 출장여비의 일부를 사업비에서 정산 가능
-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6. 이행점검 단계

### 《사후관리》

## 수산사무소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익년도 1월 이내)
-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함

## 시·도

- 사업시행 수산사무소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사업추진현황을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 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이동수리소 운영 적정 여부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며, 특히 사업비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시·군·구가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익년도 1월 이내)

## 해양수산부

- 당해연도 사업추진현황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집행주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 국가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제재》

-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추진한 수산사무소는 당초 계획대로 보완토록 하고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수산사무소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제외)
- 수산장비임대 추진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수산사무소는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 6. 실적보고 및 성과측정단계

### 《실적보고 및 성과측정》

- 수산사무소장은 매 분기별 추진실적(매분기 익월 10일까지)과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별지 제3-3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집행액,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산정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분석하여 사업 성과를 측정함

#### IV. 202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사업신청 수요조사

- 사업내용 : 2026년과 동일
- 신청절차 : 수산사업소 → 시·도 → 해양수산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및 위탁사업자의 보조사업 이력서(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와 시·도별 우선순위(1개소인 경우 불필요)
- 신청기한 : 2026. 2. 28.(해양수산부 접수)

##### 2. 2027년도 지원대상자 선정

- 2027년도 사업신청서 및 세부계획서를 검토하여 '26. 9월 말까지 선정 (정부 예산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수산장비 임대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담당자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FAX
사업구분	구 분	물량 (개소)	사업비(백만원)		
			합계	국고	지방비
	수산장비임대				
	이동수리소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수산장비임대	○ 구입장비 : 00장비(선), 00대(00톤급 0척)			
	이동수리소	○ 어촌계수 : 00개소 ○ 점검·수리 척수(기자재명) : 000척/년			
전담인력 확보내용	수산장비임대	00명 (정규직 00명, 비정규직 00명)			
	이동수리 계약업체	00개소 00명			
사업 세부운영지침 수립 여부		수립 ( ), 미수립 ( )			
<p>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수산장비임대사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자</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군수 (인) 수산사무소장(인)</p> <p>해양수산부장관 귀하</p> <p>첨부서류 : 수산장비임대사업 또는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사업 계획서 1부</p>					

[별지 제3-1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계획서(예시)

1. 사업 주관기관

2. 일반 현황

어촌계 수	어가 수	어업인 수	어선 수

3. 이동수리소 사업 계획

사업량 및 사업비

○ 이동수리소 운영 수 :        개, 총 사업비 :        천원

세부 운영내용 및 지원 소요금액

이동수리소 *일반번호로기입	서비스 대상 어촌계명	점검·수리 기자재명	소요 금액 (천원)		점검·수리 계획
			소요금액		
			인건비		
			관리비		
			부품교체비		

※ 일괄위탁의 경우 소요금액 총액으로 표기

4. 사업 추진일정

※ 점검·수리업체 선정, 점검, 사업비 정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한 추진일정을 표기

[별지 제3-2호 서식]

이동수리·점검사업 추진실적( 분기) 보고서

1.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시군명	전년도 수리건수	계 획				실 적			
		수리건수	사업비(천원)			수리건수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선박: 척 선박외: 건	선박: 척 선박외: 건				선박: 척 선박외: 건			

\* 수리건수는 누계로 작성(예. 동일선박에 대해 2회 수리한 경우 2척으로 작성)

2. 이동수리소 ○분기 운영실적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운영기간		어가수	
이동수리소수		어업인수	
어촌계수		서비스대상	선박: 척, 선박외 : 건
점검일수		무상점검·수리	선박: 척, 선박외 : 건
점검횟수		부품교체	○○ 개

\* 무상점검·수리 건수는 누계로 작성(예. 동일선박에 대해 2회 무상 점검·수리한 경우 2척으로 작성)

3. ○분기 집행예산

합 계	인건비	관리비	부품교체비	기타
천원				

4. 기타 특이사항

\* 부진원인 및 문제점, 대책, 사업효과 등 기재

이상과 같이 이동수리·점검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사무소

(인)

[별지 제3-3호 서식]

20○○년도 이동수리소 사업 완료 및 정산결과보고

1. 사업 추진기관

- 사업 주관기관 :
- 보조 사업개요

(단위 : 천원)

회계연도	보조사업명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시도	시군구	

2.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시군명	전년도 수리건수	계 획				실 적			
		수리건수	사업비(천원)			수리건수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어촌계 개소 선박: 척 선박외: 건	선박: 척 선박외: 건				어촌계 개소 선박: 척 선박외: 건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운영기간		어가수	
이동수리소수		어업인수	
어촌계수		서비스대상	선박: 척, 선박외 : 건
점검일수		무상점검·수리	선박: 척, 선박외 : 건
점검횟수		부품교체	○○ 개

<p>현장 수리사진</p>	<p>현장 수리 사진</p>
----------------	-----------------

3. 사업 평가(기타의견)

\* 부진원인 및 문제점, 대책, 사업효과 등 기재

4. 국비 보조금 정산 신청내역

(단위 : 원)

교부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액		
			계	집행잔액	이자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수산장비 임대사업 완료 및 정산내역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0000시·도 0000과 직급 해양수산0급 000 (인)

000시·군·구 0000과 직급 해양수산0급 000 (인)

000시·군·구 0000과 직급 해양수산0급 000 (인)



## [별지 제3-5호 서식]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표준) 약정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어업용기자재 이동 점검·수리를 시행함에 있어, ( )수산사무소장을 “갑”이라 하고, 지원대상 어촌계( )를 “을”이라 하며, 이동점검·수리업체( )를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2. 약정금액 : 원(월 원)
3. 약정내용

제1조(업체)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를 실시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일정에 맞추어 점검·수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①“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점검·수리활동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약정금액에 따라 매월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② 약정이 무효 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어촌계와 업체와의 관계)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내용이 다르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 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운영일지 미작성 등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 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사업추진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지원대상 어촌계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를 시행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과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00 소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계획서 1부.







[별지 제3-9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약정체결 결과보고

체결일자 :

약정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체결내용

업체명	어촌계명	대상 기자재명	점검·수리일	약정 금액(월)
			00일/월	

이동점검·수리반 편성

약정금액 산출내역

특이사항